

판매자는 뱅사(PG사)가 제공하는 전자적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전송하는 방법으로 매출채권에 대한 매입신청을 합니다.

1. 은행이 지정하는 무소구조건 매출채권매입 신청코드
2.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판매자식별번호
3. 은행이 지정한 해외지불대행사식별코드
4. 해외지불대행사로부터 통지 받은 매출채권식별번호
5. 상기 매출채권식별번호를 통지 받은 일자 및 시간
6. 승인통화표시 매출채권매입 신청금액

제4조(환율 적용)

- ① 동 조에 적용되는 환율은 판매자가 입금 받을 정산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승인통화와 정산통화가 일치할 경우 본 조 2항내지 4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② 은행은 매출채권의 매입 시 적용할 환율을 판매자가 판매시점 전에 미리 확인할 수 있도록 매 영업일(D)의 오전 10시 까지 '익영업일매입환율'과 '익익영업일매입환율'을 전자적통신망을 이용하여 제공합니다.
- ③ 은행은 아래와 같이 환율을 적용하여 매출채권을 매입합니다.
 1. '영업일(D) 11시부터 익영업일 0시 직전까지 발생한 매출채권: 영업일(D)에 제공된 '익영업일매입환율'로 익영업일(D+1)에 매입
 2. 익영업일(D+1) 0시부터 11시 직전까지 발생한 매출채권: 영업일(D)에 제공된 '익익영업일 매입환율'로 익익영업일(D+2)에 매입
- ④ 위 2항에서 매출채권이 발생한 시점은 제3조 제5호의 '매출채권 식별번호를 통지받은 일자 및 시간'으로 합니다.

제5조(매출채권의 매입 및 매입거절 방법)

- ① 판매자는 전영업일에 판매한 매출채권을 전영업일의 0시부터 11시 직전까지 판매한 매출채권과 전영업일 11시부터 영업일 0시 직전까지 판매한 매출채권으로 구분하여 매영업일 9시 30분까지 은행에 매입신청하며, 은행은 동 매출채권을 위 제4조 제3항에서 정한 환율을 적용하여 매입하기로 합니다. 단, 승인통화와 정산통화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매입합니다.
- ② 어떠한 사유로든 제1항과 같이 매출채권의 매입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 판매자는 가능한 시점에 매입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은행은 신청접수시점을 기준으로 제4조 제3항 2호의 환율을 적용하여 처리합니다. 단, 승인통화와 정산통화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환율을 적용하지 않고 처리합니다.
- ③ 은행은 매입신청이 접수된 영업일의 자정까지 매출채권 매입대금을 판매자 명의의 계좌 (은행)에 입금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지정한 계좌가 하나은행 계좌가 아닌 경우, 입금일 현재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된 인터넷뱅킹 방식 타행송금수수료를 공제하고 매입신청이 접수된 영업일의 자정까지 입금합니다. 다만, 판매자가 매입신청한 매출채권 중 해외지불대행사로부터 결제확약'을 통지받지 못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은행은 매입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은행은 매입거절한 매출채권 명세를 판매자에 통지합니다.
- ④ 해외지불대행사가 매입거절된 매출채권'에 대하여 은행에 다시 결제확약을 한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제2항을 준용하기로 합니다.

제6조(환불대금 송금신청 방법)

판매물품의 반품 등을 사유로 판매자가 해외지불대행사의 회원에게 매출채권 금액을 환불하고자 하는 경우, 판매자는 전자적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은행에 전송하는 방법으로 환불대금에 대한 송금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 환불대금송금 신청코드
2.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판매자식별번호
3. 은행이 지정한 해외지불대행사식별코드
4. 해외지불대행사로부터 통지 받은 환불채무식별번호5. 상기 환불채무식별번호를 통지 받은 일자 및 시간
6. 정산통화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

제7조(환불대금 송금 및 송금거절 방법)

- ① 판매자는 전영업일의 0시부터 11시 직전까지 해외지불대행사에게 통지한 환불대금과 전영업일 11시부터 신청일의 0시 직전까지 통지한 환불대금을 구분하여 매영업일의 9시 30분까지 은행에 송금신청 합니다.
- ② 어떠한 사유에서라도 제1항에서 정한 송금신청 시간까지 송금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익영업일 9시 30분까지 재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신청 시점을 기준으로 제1항과 같이 처리하기로 합니다.

- ③ 은행은 판매자로부터 송금신청이 접수된 직후부터 동 영업일의 자정 사이에 정산통화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을 제5조 제3항에 기재된 판매자 명의의 계좌에서 별도의 출금전표 없이 출금하여 송금합니다.
- ④ 판매자의 계좌가 타행계좌이거나, 판매자의 계좌 잔액이 정산통화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보다 작은 경우에 은행은 뱅사(PG사)의 계좌에서 정산통화표시 환불대금출금신청금액을 출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뱅사(PG사)에게 판매자 앞 동 출금액만큼의 대지급금청구권이 발생하며 판매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합니다.
- ⑤ 은행이 환불대금의 송금처리를 완료한 경우 즉시 판매자에게 전자적통신망을 이용하여 다음의 내용을 통지함으로써 환불대금 송금완료 통지합니다.
 - 1. 환불대금 송금신청 접수코드
 - 2. 해당 환불대금에 해당하는 환불채무식별번호
 - 3. 정산통화표시 환불대금 송금액
- ⑥ 은행은 제 3항의 판매자 명의의 계좌에 잔액이 부족하고 제4항에 따라 뱅사의 계좌에서 송금신청금액을 출금하지도 못한 경우에는 환불대금을 송금하지 않으며, 제 5항의 업무처리 완료통지를 하지 않습니다

제8조(매출채권 매입신청시 준수사항)

판매자는 은행에 매입 요청한 매출채권을 은행 이외의 자에게 양도해서는 안됩니다.

제9조(유효기간)

-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계약기간 만료일 3개월전까지 별도의 서면통지 없는 경우에는 1년씩 자동 연장됩니다.
- ② 제 1 항에도 불구하고, 본 계약과 관련하여 은행과 해외지불대행사 또는 뱅사(PG사)와 해외지불대행사가 체결한 계약이 종료될 경우에, 은행이 해당 사실을 판매자에게 계약 종료일자 2주전까지 사전 통지하면 본 계약도 해당 종료일자에 종료되는 것으로 합니다.
- ③ 계약의 종료와 관련하여 당행의 귀책사유가 없는 해외지불대행사의 일방적인 거래 중단 등으로 판매자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당행이 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당행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 당행은 그 책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합니다.

제10조 (준거법 및 관할법원)

이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하기로 하고, 조정이 안될 경우 분쟁의 처리는 대한민국 법을 적용하며 제1심 관할법원은 민사소송법 등이 정한 바에 따르기로 합니다.

제11조 (특약사항)

※ 이 계약의 성립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여 판매자와 은행이 각각 1부씩 보관한다.



[별첨양식] 복수매장 신규등록 요청리스트(계약서와 간인요망)

	신청구분 (신규등록)	매장사업자번호	매장상호	매장주소	정산계좌번호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수기 외 방식으로 별도 작성된 위 형태의 리스트 첨부 가능